

심사보고서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2019. 9. 2.(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수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8월 22일

-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이수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를 정비함(안 제4조, 안 제11조, 안 제13조)
 - “당해” → “해당”, “익월” → “다음 달”
- 인용 조문을 명확히 표기함(안 제14조)
 - (현행) “별표” → (개정) “별표 2”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제79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‘별표’가 ‘별표 2’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기타 조문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
따른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
어 정비를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
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등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익월”을 “다음 달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이사)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·국장과 세무·회계전문가,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도의 관련 실·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<u>당해</u>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이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사채발행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<u>당해</u>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1조(사채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업무상황의 공표) 사장은 <u>당해</u> 연도의 업무상황을 6월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<u>익월</u>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업무상황의 공표)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다음 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과태료 부과 기준)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<u>별표</u>와 같다.</p>	<p>제14조(과태료 부과 기준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2</u>-----.</p>